



R & B

Policy & Business Report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안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 & B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국회 입법정보전문지 P&B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lc@draju.com으로 문의바랍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과 :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 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I.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특집	06	1. 구성
	08	2. 관련법령

II.

발의	12	1. 발의 법률안 목록
	23	2. 주요 법률안 소개
		국회운영위원회
	23	1)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법제사법위원회
	24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정무위원회
	27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9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0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3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3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7	11)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12)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3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I.

별의

41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2	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III.

소위원회

44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46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3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IV.

상임위원회

56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60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V.

본회의

62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63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I.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구성
2. 관련법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정수 26

현원 26

더불어민주당 15

국민의힘 9

비교섭단체 2



위원장
임 이자

선 거 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서울 관악구을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장
김영진

경기 수원시병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장
김영환

경기 고양시정
초선(제22대)



위원
김태년

경기 성남시수정구
5선(제17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김한규

제주 제주시을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박홍근

서울 종로구을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안규백

서울 동대문구갑
5선(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초선(제22대)



위원
이소영

경기 의왕시과천시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정성호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5선(제17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정일영

인천 연수구을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조승래

대전 유성구갑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조인철

광주 서구갑
초선(제22대)



위원
진성준

서울 강서구을
3선(제19대, 제21대, 제22대)



위원
최기상

서울 금천구
재선(제21대, 제22대)


국민의힘

 <p>간사 박수영 부산 남구 재선(제21대, 제22대)</p>	 <p>위원 권영세 서울 용산구 5선(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21대, 제22대)</p>	 <p>위원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p>
 <p>위원 박성훈 부산 북구을 초선(제22대)</p>	 <p>위원 박수민 서울 강남구을 초선(제22대)</p>	 <p>위원 윤영석 경남 양산시갑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p>
 <p>위원 이종욱 경남 창원시진해구 초선(제22대)</p>	 <p>위원 최은석 대구 동구군위군갑 초선(제22대)</p>	

조국혁신당

 <p>위원 차규근 비례대표 초선(제22대)</p>
--


개혁신당

 <p>위원 천하람 비례대표 초선(제22대)</p>
--

소관기관

정부기관	재정경제부	관련기관	한국은행
	기획예산처		한국수출입은행
	국가데이터처		한국조폐공사
	국세청		한국투자공사
	관세청		한국재정정보원
	조달청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경제 · 재정부문	1	경제교육지원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4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국가재정법
	9	국가채권관리법
	10	국회회계법
	11	국고금관리법
	12	국민경제자문회의법
	13	국유재산법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15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16	국채법
	17	귀속재산처리법
	18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19	담배사업법
	20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2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3	물품관리법
	24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27	부담금관리기본법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3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31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34	정부기업예산법
	35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경제·재정부문	37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38	통계법
	39	한국수출입은행법
	40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41	한국은행법
	42	한국재정정보원법
	43	한국조폐공사법
	44	한국투자공사법
	45	협동조합 기본법
	46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1	개별소비세법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관세법
조세부문	4	관세사법
	5	교육세법
	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국세기본법
	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9	국세징수법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1	농어촌특별세법
	1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13	법인세법
	14	부가가치세법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세무사법
	17	소득세법
	18	수출용원자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9	인지세법
	20	임시수입부가세법
	21	자산재평가법
	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3	조세범 처벌법
	24	조세범처벌 절차법
	25	조세특례제한법
	26	종합부동산세법
	27	주세법

부문	번호	소관법률
조세부문	2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9	증권거래세법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O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6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7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O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집단소송법안
		30	차별금지법안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3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5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6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7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회계기본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재정경제기획위원회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12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11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1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20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시민참여기본법안
		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지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3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지방의회법안
		4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O	18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식용유자산업 육성법안
		2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한국4·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해양이용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	8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산업체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O	21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2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16	돌봄정책기본법안
		17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2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3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46		환자기본법안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O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O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24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25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보호지역 기본법안
	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39		임금체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4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4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5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1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동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26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38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성평등가족위원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성평등가족위원회		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730호



이 학 영

선 거 구	경기 군포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30. 제안
----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3675호)은 청문회에서 증인이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증인이나 관계 기관이 보고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상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불출석죄(제12조), 국회모욕죄(제13조), 위증죄(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는 청문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의 장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를 담보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국회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회증언감정법에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신설되는 범죄에 대한 고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5조를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집단소송법안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877호



오 기 형

선 거 구 서울 도봉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6.01.06.	제안

▶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제작사 배기가스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기업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 현행법상 증권분야 외에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적 구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이 경우 소송비용이 피해자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그런데 증권분야의 피해자들과 다른 분야의 피해자들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증권분야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음.

이에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하여, 증권 분야를 포함한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손해전보·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대표단체가 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원고에 한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4조).

다.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1조).

라. 집단소송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마. 책임확인소송을, 상당한 다수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재산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그 구성원에게 공통되는 사실상·법률상 원인에 기초하여 개개의 구성원의 사정에 의하여 그 금전의 지급청구에 이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그 구성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바. 피해자의 위임이 없더라도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에게 책임확인소송의 제기를 허용하며, 책임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총원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등의 사정으로 개별 구성원의 손해액을 선고하기 전에 상대방이 구성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사.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 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에게 개별통지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4항).

아. 대표당사자외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42조).

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5조 및 제73조).

차.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3조).

카.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타.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파.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3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809호



한 정 애

선 거 구	서울 강서구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31. 제안

💡 제안이유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구조조정 및 산업체편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옴.

그러나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이 부실화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적인 이익실현에 매몰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소비자 및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하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차입금액이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그 사유,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는 제외)를 통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근로자대표에게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
- 나.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 등을 업무집행사원의 보고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보고 항목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2).
- 다.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에게 제공 · 설명하는 항목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4).

4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866호



김 현 정

선 거 구 경기 평택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6.01.06. 제안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최근 특정 온라인쇼핑몰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가 계열회사 관계로, 하나의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로 접속하여 별도 결제정보 입력 없이 간편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접근매체 등 정보 유출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의 결제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여도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포함한 현행법상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 의무 대상에 동일 접근매체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 등).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733호



이 재 관

선 거 구 총남 천안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30. 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스플레이기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술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법을 통한 디스플레이기술에 대한 지원이 국내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기술 사업 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되는 소재·부품·장비의 활용 비율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제도를 운영중이나 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월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제25조의9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안번호 제15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918호



황 정 아

선 거 구	대전 유성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 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로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6.01.08.	제안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005호



김 동 아

선 거 구 서울 서대문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2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6.01.13.	제안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약 805만 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약 804만 개에 달하여 기업 수 비중 99.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기업 종사자 약 2,341만 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 수 약 1,896만 명으로 81.0%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 매출액 추정치 약 7,490조 원 중 중소기업 비중이 3,309조 원으로 약 4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기업 수 기준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며, 일자리 기준으로도 국민 소득의 높은 비중을 책임지는 한편, 매출 기준으로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경제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대표자가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막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로 인하여 승계자 지분율이 하락하여 채권 은행으로부터 대출 회수 통보를 받으며 흑자도산하거나 생산 기반의 매각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기업 승계 실패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심각한 일자리 소멸이 발생하고 있음.

반면, 기업의 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경우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전 세계 장수 기업의 41.3%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감면 혜택과 산업기술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적 차원의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경제 근간을 이루면서 높은 일자리 비중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국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해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원활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중소기업의 승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승계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민법」 상 유류분 적용 특례를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안 제30조8의 신설), 승계지원 등록기업 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 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9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6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8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299호



최민희

선 거 구 경기 남양주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19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16.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음.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해당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원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전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침해사고 예방,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52호



김 성 회

선 거 구 경기 고양시갑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2대)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 의무와 그 불이행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 등으로 표시하여 얻는 이익이 시정 명령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법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23. 제안
----	----------------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847호



박 수 현

선 거 구 충남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19대, 제22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6.01.05. 제안

▶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인해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목소리, 얼굴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단 이용될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무단 이용하여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콘텐츠 등을 제작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이익 및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은 이미 방송 · 영화 ·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 및 가치를 인정받아 독립된 경제재로서 거래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사람의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및 가치를 독점적 ·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상속이나 보호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법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소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오늘날의 거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응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균형있게 규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 보호 및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함(안 제3조).

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안 제6조).

라. 퍼블리시티권은 퍼블리시티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함(안 제7조).

마.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초상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기간 및 방법, 조건의 범위에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시사보도나 정보전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여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자는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함(안 제12조).
- 아. 퍼블리시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간주함(안 제15조).
- 자.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 차.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표시를 제거 · 변경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508호



이 재 관

선 거 구 총남 천안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22. 제안

 제안이유

디스플레이산업은 OLED, Micro LED, LCD 등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함께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침단전략 산업임. 특히, 디스플레이산업은 IT, 모빌리티, 항공, 방산 등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생산설비·연구개발·전후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디스플레이산업은 중국과 양강 경쟁구도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중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집중 투자하여 '21년 세계시장 1위 탈환 후 유지 중임. 디스플레이기술 초격차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으나,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디스플레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5조).

다.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를 둠(제8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스플레이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디스플레이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디스플레이특구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조세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규제개선 등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지원, 디스플레이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006호



김 동 아

선 거 구 서울 서대문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2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6.01.13. 제안

▶ 제안이유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약 805만 개 중 중소기업이 약 804만 개로 99.9%를 차지하고, 전체 종사자 약 2,341만 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약 1,896만 명으로 81.0%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 매출액 추정치 약 7,490조 원 중 중소기업 비중이 약 3,309조 원으로 4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업 수 기준으로 사실상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보여주며, 고용 · 매출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함.

그런데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 사망 시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등으로 흑자도산이나 기업 매각이 발생하여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에 미치지 못하고, 승계 실패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대규모 일자리 상실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일본은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토대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전 세계의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감면과 산업기술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 존속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승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기업 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승계지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승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하여 정보 제공, 자문, 융자·보증 연계 등을 지원하고, 승계 후 경영성과 확대를 위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를 비롯하여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소재불명 주식 처리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 승계 후 사업재편을 원활히 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사.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 후 고용안정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세제, 인력, 판로, 능력 개발 등 각종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교육공무원 등의 겸직 특례 및 규제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6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883호



선 거 구 서울 강남구병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6.01.07.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경우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인 바, 이는 전 산업·전 직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획일적 기준'임. 이러한 단일 기준은 제도 도입 당시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나,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된 오늘날의 근로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숙련 전문직과 육체근로 중심 직무간에는 고령 근로자의 '근무 가능 연령'과 '고용 유지 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동일한 정년기준'을 강제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전 분야에 걸쳐 '65세'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최일선 산업 현장의 현실과 기업들의 경영 여건, 근로시장의 복합적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을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이렇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 상향 강제'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신규 채용 위축',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 '형식적 고용 유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나아가 산업과 직무 특성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영역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 사회적으로 고령자 고용 전반에 대한 '근로 수용성을 저해할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정년'을 연장할 때에 그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 근로자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기업 규모, 업종, 산업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정년과 같이 '갈등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안'을 '경직된 법률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 하위 법령'에 의하여 '사회적 합의 시스템'이라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유연하게 조정함과 동시에 현실적 근로시장에 더 부합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정년 연장 외에 '퇴직 후 재고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사간 협의가 경직되고 정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재고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과 임금차등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사업주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다양한 고용 유지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을 구축하고자 함.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기의 입법적 대안을 통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상호 조화롭게 달성하고, 획일적 정년연장이라는 단순한 해법을 넘어 산업과 직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보다 원활한 노사간 사회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고령사회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정년제도'를 효과적으로 구축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9조의3 신설).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791호



전 현 희

선 거 구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3선(제18대, 제20대,
제22대)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되,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가 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산정 하더라도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하여 '노동 착취',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31. 제안
----	----------------

자정경제기획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581호



고 동 진

선 거 구 서울 강남구병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24. 제안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90%에 달하는 등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출 연체율 및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OECD 38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업종 · 지역 · 연령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 · 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0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0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6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1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13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5	선박재활용법안
		6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 법안
		10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1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자정경제기획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948호



강민국

선 거 구 경남 진주시을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4.10.28.	제안
소	2024.12.03.	
위	2025.07.22.	
원	2025.11.25.	상정
회	2025.12.1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2)

▶ 제안이유

온라인 유통은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 일상 속에서 빠르게 보편화되었음.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 거래는 온라인 유통시장을 대표하는 거래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음.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급성장해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노정하였음. 이 사태로 인한 미정산 대금이 총 1.3조 원에 달하고, 피해업체가 4만 8천여 개 사에 이르는 등 온라인 입점 사업자들의 취약한 지위가 드러났지만,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등 전통적 소매거래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정의 규정 등에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추가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이 법상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조의2).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거나 청약접수의 지원을 하는 자 중 중개거래 수익(중개거래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금액(통신판매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국내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함.
- 2)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안 제8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보호(안 제8조의2), 그 밖의 거래 관계의 투명성 · 공정성과 관련한 의무(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규정을 적용함.

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2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 신장식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908호



김 남 근

선 거 구 서울 성북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신 장 식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조국혁신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한 창 민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사회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인수 · 합병, 영업 ·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분할 또는 분할 · 분할합병 등의 주요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지배주주 임원에 대한 과다한 보수지급이나 성과주식 배정 등의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사안에 이사, 이사회 등 기업의 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지배주주나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이익에 충실히 운영되면서,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져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거나 개미투자가 대거 해외 자본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자본시장 전체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책임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각사 안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배정 등의 주주보호 조치와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격에 의한 합병비율, 주식매수가격 등을 정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함.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매입할 당시 지배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2만3,182원인 반면 소액주주에 부여된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당 6,637원에 불과했고,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지분 43%를 인수할 당시엔 지배주주에게는 주당 1만6,518원, 소액주주엔 그 반값에 해당하는 주당 7,999원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된 사례와 같이 기업인수 시 지배주주 소유의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서 일반주주의 주식은 혈값으로 인수하여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새로운 지배주주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 내 거래 최고가격 등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안 제133조의2).

삼성물산-제일모직,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사례와 같이 건실한 사업 · 재무구조를 가진 주식상장법인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부실한 계열사와 부당한 합병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지배주주나 재벌 기업집단과 달리 장기 투자하고 있던 일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됨. 이에 주식상장법인의 합병비율은 특정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의 과반수 결의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합병비율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165조의4제2항, 제165조의5제3항).

미래 유망성장산업인 2차 전지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상장하여 미래 유망성장사업을 잃은 모회사 주식가치가 떨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은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 사례와 같이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물적분할에 의한 설립된 것 포함)를 별도 상장하는 경우 상장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12.24.	제안
상 임 위 원 회	2025.0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소 위 원 회	2025.02.20.	상정 축조심사
	2025.07.21.	
	2025.11.24.	상정
	2025.12.15.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함(안 제165조의7제4항)

내부 이익잉여금 상당히 유보되어 있고 매년 흑자를 내는 주식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수인이 주식상장법인을 자진 상장폐지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은 신성통상 사례와 같은 상장폐지 시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상장법인을 인수한 자가 상장폐지 목적으로 나머지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금액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함(안 제141조제3항).

지나치게 낮은 할인율로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주주는 주식 가치 회복으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유상증자 전 주식 처분 등의 대응조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수페타시스 사례와 같이 일반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요일 저녁에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 시 주가가 폭락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거나, 고려야연 지배권 분쟁 시 유상증자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분확대 목적으로 저가로 유상증자를 시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유상증자를 금지하며, 유상증자 등 주요 사항보고서는 거래소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안 제165조의6 제5항 및 제6항, 제161조제1항).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최초 전환가격 보다 낮춰 행사(최대 70%까지 낮추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위 refixing)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일반주주는 주가가 회복되어 피해를 입게 됨. 이에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의 경우 시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 중에는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함(안 제165조의10제3항 및 제4항).

지배주주가 임원을 담당하는 경우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여 주식상장법인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주식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할 때는 보수의 원칙과 목표, 보수 산정방법, 보수지급계획 등의 “보수정책”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고 보수정책을 위반하여 초과 지급된 보수는 무효로 반환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1).

위와 같은 기업 인수 · 합병과 신사업 물적분할 후 별도상장,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 행사, 지배주주인 임원에 대한 과다보수 등 지급 사안 외에도, 주권상장법인에서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위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하는 경우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최대주주 등은 위 개별규정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자본거래, 손익거래 방식을 만들어 이를 회피할 것이 예상됨. 이에 주식상장법인의 자본거래 등에서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가 주주에 충실향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두도록 함(안 제165조의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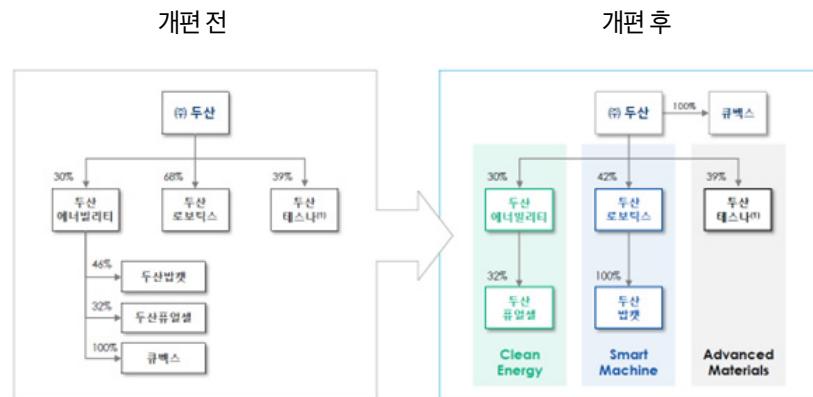
 참고자료

[의무공개매수제도 관련 해외사례]

구분	매수 요건	매수 대상	매수 가격
미국	제도 미도입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규모 이상* 취득 <p>* 회원국 결정사항 (독·프)30%, (이)25%</p>	○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영국	○ 30% 이상 취득	○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일본	○ 1/3을 초과 취득	○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 2/3를 초과 취득	○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舊증권 거래법	○ 25% 이상 취득	○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 최소 50%+1주 매수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개정안	○ 25% 이상 취득	○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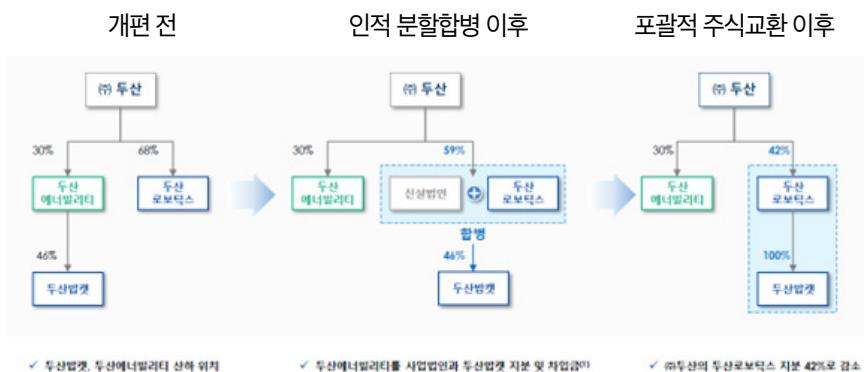


주: 지분율의 경우 의결 기준 적용, 주식매수청구권 미발생 가정

주1) Financing Vehicle인 두산포트폴리오파운데이션은 표기 생략함.

(자료: 두산 「두산로보틱스/두산베톤 사업구조 개편 및 성장전략」, 2024.7.)

[두산그룹 인적분할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



주: 지분율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미발생 가정

주1) 세무상 적격지준(Tax 미발생)을 위해 과거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베톤 인적분할합병 과정에서 두산베톤 취득을 위해 부담한 차입금 중 Refinancing 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금액(약 7,200억원)을 함께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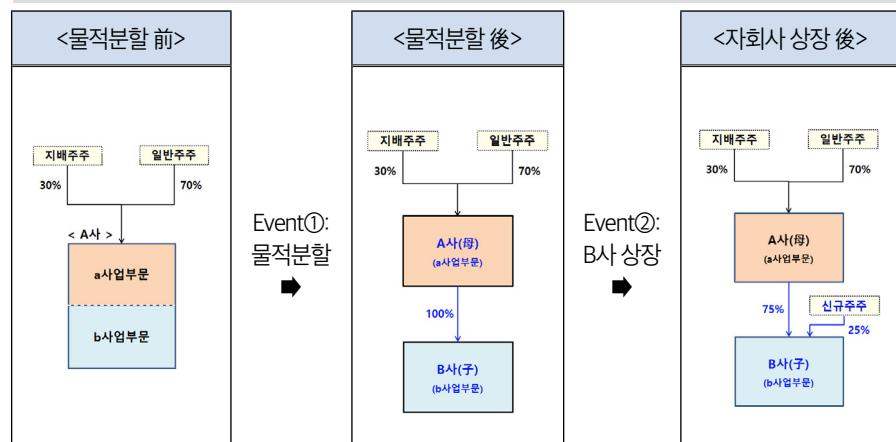
(자료: 두산 「두산로보틱스/두산베톤 사업구조 개편 및 성장전략」, 2024.7.)

[유상증자 발행가액]

구분	주주배정방식		제3자배정방식		공모방식
	실권주 미발행	실권주 발행	일반	의무보유하는 경우	
발행 가액	발행가액 자율결정	기준주가에서 40% 이내로 할인된 금액	기준주가에서 10% 이내로 할인된 금액		기준주가에서 30% 이내로 할인된 금액
기준 주가		가중산술 평균주가	가중산술 평균주가	Min(①,②)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중산술 평균주가
가산일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실무해설집 II, 2024.)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주주 구성 변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2022.3.7.)

[LG화학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따른 주가 변화]

일자	내용	주가(종가)
2020. 9. 17.	• 2차전지 관련 사업부문 물적분할 공시	645,000원 (전일대비△6.1%)
2020. 9. 24.	(물적분할 공시 일주일 후)	611,000원 (일주일간△5.3%)
2020. 12. 1.	• LG에너지솔루션 설립	809,000원
2021. 12. 7.	• 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결정 공시	711,000원
2022. 1. 27.	• LG에너지솔루션 유가증권시장 상장	610,000원

(자료: 금융위원회)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별 IPO 공모주식 배정물량]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비율	규정	비율	규정
우리사주조합	20%	자본시장법 §165의7① 근로복지기본법 §38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①(1)	20% 이내 (자율)	근로복지기본법 §38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①(2)
일반청약자	25% 이상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①(3)	25% 이상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①(3)
(우리사주 잔여주식 발생 시 자율)	(+5% 이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①(6)	(+5% 이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①(6)
기관 투자자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하이일드)	5% 이상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①(4)	10% 이상
	벤처기업 투자신탁	-	-	25% 이상
	기관자율	잔여 주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①(7)	잔여 주식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 사례]

물적분할 최초공시	분할기일	존속회사	신설회사		
			회사명	상장일	공모규모
2018.5.2.	2018.7.1.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2021.3.18.	1조 1,246억원
2019.2.8.	2019.4.1.	네파스	네파스아크	2020.11.17.	620억원
2019.2.28.	2019.4.1.	SK이노베이션	SKIET	2021.5.11.	1조 6,684억원
2019.2.1.	2019.6.1.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2021.9.17.	1조 800억원
2020.9.17.	2020.12.1.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2022.1.27.	12조 7,5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외국에서는 상장사에 대해서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명시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우며,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의 규제차이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상법」과 관련하여, “회사”는 장기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의미하므로 현행 규정으로도 장기적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사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소극적 경영 및 투자결정 저해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①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이사의 충실의무란 회사(위임자)와 이사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의 대상을 직접 위임자가 아닌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하지 않고, 사법리스크 등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임. 또한, ②총주주 보호의무 및 전체 주주 이익 공평대우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이사 의무의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경영상 혼란을 기종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974호



김 주 영

선 거 구	경기 김포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5.12.05	제안
소 위원 회	2025.12.23	회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 위원회 직접 회부(2025.12.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다수·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와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재발방지 조치 이행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이 사고의 중대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수준 및 실질적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IV.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1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4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43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44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58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59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6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6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6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0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속기사법안
		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19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1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4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	선박재활용법안
		16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
		17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수산증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5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2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3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042호



박 범 계

선 거 구 대전 서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5.12.09.	제안
소 위원회	2025.12.15.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상 임 위 원 회	2025.12.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보고 의결 (대안반영폐기)

💡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등(안 제34조)

기존 통지 대상이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개인정보의 삭제·차단·회수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나. 단체소송 대상 확대(안 제51조)

현재 단체소송 대상인 금지·중지 청구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집단적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함.

다.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V. 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215126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5.12.30. 원안가결
	2026.01.09. 정부이송

제안이유

2025년 1월 21일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나 인공지능 분야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공지능 제품 ·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고령층 등 이른바 인공지능취약계층과 일반인의 격차를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 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 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 · 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우선 생성 · 제공 범위 및 기준, 생성 · 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구 · 개발 · 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 ·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 위원회의 위원을 60명 이내로, 부위원장은 3명 이내로 확대하며, 부위원장 중 1인을 상근직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을 확대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10조제4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마.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안 제16조제3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제3항).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보조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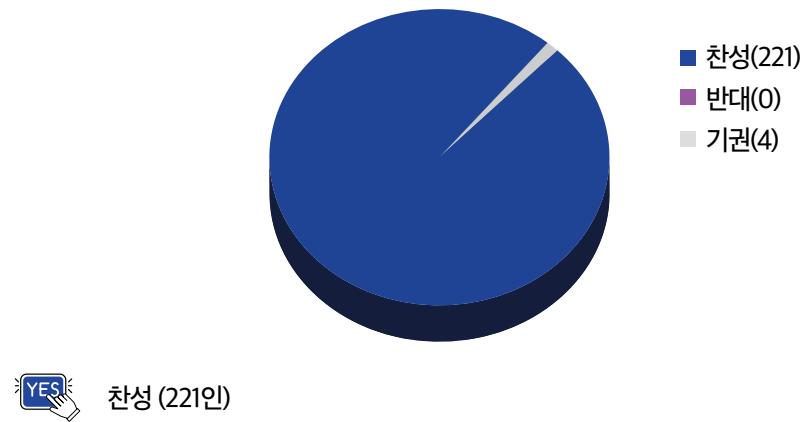
자.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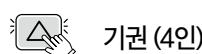
- [221329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등 10인)
- [221274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등 10인)
- [221267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등 10인)
- [221179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등 10인)
- [221176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등 10인)
- [2211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등 10인)
- [221063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등 11인)
- [22106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등 11인)
- [22083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5.12.10 / 2025.12.30
- 발의자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25인 / 재적 298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25인(찬성 221인, 반대 0인, 기권 4인)



강경숙 강대식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흥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의원



김은혜 이주영 정희용 한창민 의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215443호

심사 진행 경과

본 회 의	2025.12.24.	원안가결
	2025.12.26.	정부이송
	2026.01.06.	공포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함. 그러한 행정 심의마저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본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이하 “가해자”라 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의 법정손해액 부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추가함.

이용자 규모가 특별히 크고 정보의 생산·유포 방식이 고도화된 대규모 정보통신망의 등장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이 빨라지고 피해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수단의 도입이 매우 절실해짐.

본 개정안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처럼,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하는 이른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도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하였음. 정보에 대한 fact-checking(사실확인) 활동을 하는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을 지원하여 불법정보와 허위 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8까지 및 제44조의20부터 제44조의27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 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용자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등).
- 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추가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 다.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함(안 제44조의7제2항 신설).
-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안 제44조의10 신설).
- 마.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의 적용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안 제44조의12 신설).
- 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하고 분쟁조정 절차,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44조의18부터 제44조의23 신설).
- 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 신설).
- 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함(제70조제1항 삭제 및 안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2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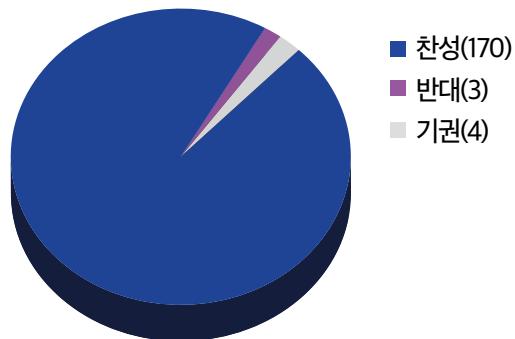
- [22145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등 10인)
- [22145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등 14인)
- [22141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등 11인)

- [22136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등 10인)
- [22136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등 10인)
- [22129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등 11인)
- [22128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등 11인)
- [2212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2인)
- [22126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등 10인)
- [22123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등 13인)
- [2212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1인)
- [2212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등 15인)
- [221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등 13인)
- [2209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 배의원 등 10인)
- [22093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등 10인)
- [22092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 진의원 등 13인)
- [22088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 지의원 등 10인)
- [22082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등 11인)
- [22048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 원 등 10인)
- [22045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 희의원 등 12인)
- [220338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 상의원 등 11인)
- [22033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등 11인)
- [2200029]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외 51,408인)
- [22028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 현의원 등 15인)
- [22024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등 10인)
- [22024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 육의원 등 12인)

- [22023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등 11인)
- [22003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등 16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5.12.23 / 2025.12.24
- 발의자 / 제안자 : 최민희 의원
- 표결 의원 : 재석 177인 / 재적 298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177인(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



 찬성 (17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홍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흥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의원



반대 (3인)

이주영 정혜경 천하람 의원



기권 (4인)

박주민 손 솔 용혜인 한창민 의원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제안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 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59의2).

제안설명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 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국회법』§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
-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 · 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 공청회** · **청문회**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58⑥). 「국회법」은 공청회 · 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축조심사** ……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57⑦ · §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 찬반토론** ……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106).
- 심사보고서** ·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54). 번안동의(「국회법」§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별첨 국회 일정표

월호는 2025.12.15.부터 2026.1.14.사이에
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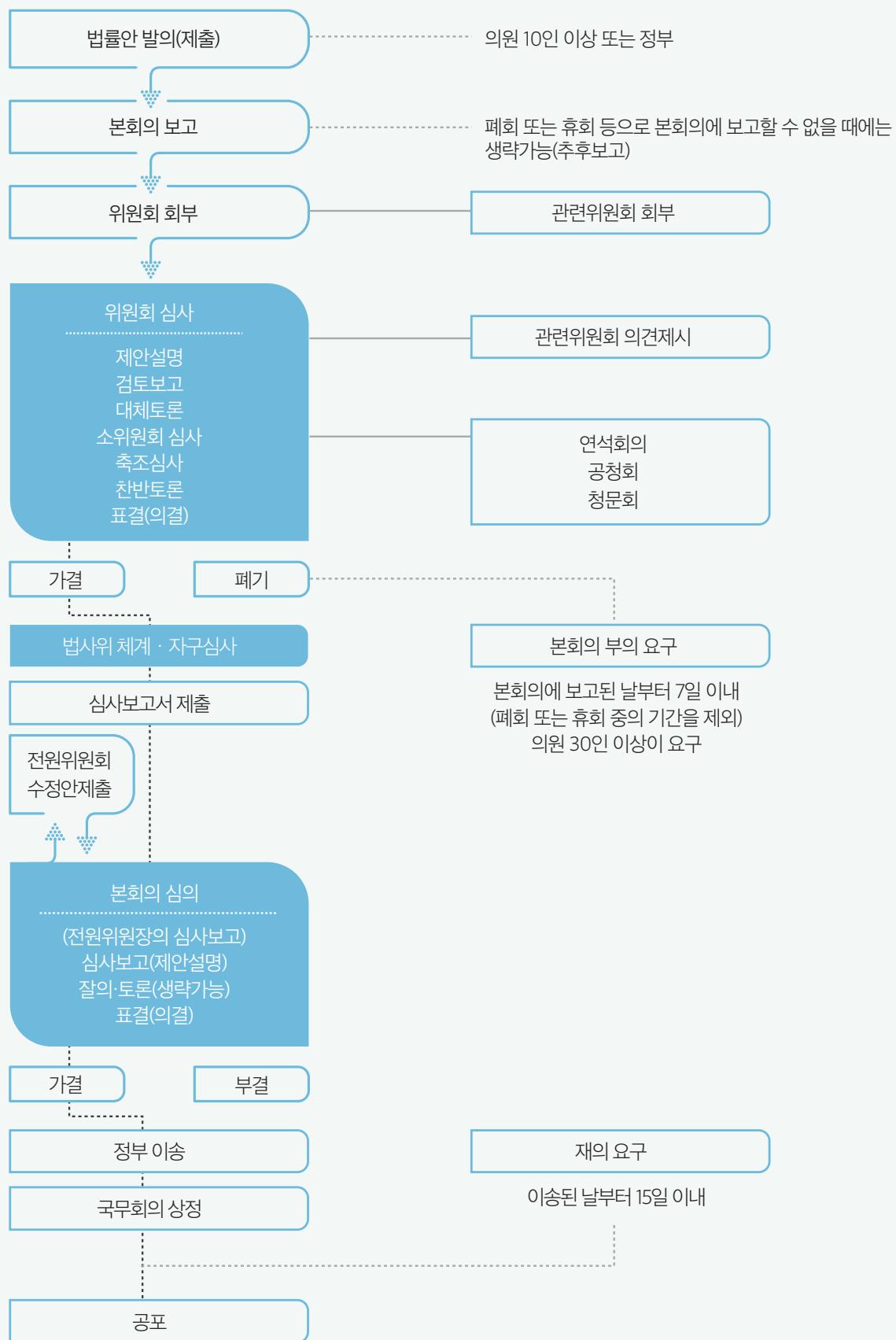


R&B

Policy & Business
Report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19층

www.draju.com